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295호 2021. 4. 19.(월)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안내사항
공고(예천군 공고 제2021-577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안내사항 공고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18조(공고)에 의거 해직공무원 등 결정 신청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예 천 군 수

1. 해직공무원 등 결정 신청대상 및 자격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 또는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집단 행위의 금지의무 위반, 무단결근·직장이탈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당연퇴직·직권면직·계약해지」 또는 「강등·정직·감봉·견책」 처분을 받은 공무원(사망한 경우 유족)으로서 처분 당시에 소속 하였던 기관의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서면으로 신청한 자

2. 신청서 접수기관 및 제출서류

- 접수기관 : 예천군청 행정지원실

- 제출서류

- 공무원 경력증명서
- 해직·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 관련 자료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서 등 자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유족대표자 선정서(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신청기간

-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021년 7월 13일)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연장 사유서를 작성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위원회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2021년 10월 13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된 신청 기간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4. 해직공무원 등 심의·결정 절차

- 심의기관 :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지자체의 경우 인사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음)
- 심의사항

- 해직공무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 복직대상자 결정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해직공무원의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
- 사실조사 등에 관한 사항
- 복직 및 명예회복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회의 심의결정 :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결정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3개월

의 범위에서 심의·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결정서의 송달 : 위원회는 결정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재심의 :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한다.

5. 문 의 처 : 예천군 행정지원실 후생복지팀 (☎054-650-6842)

[]해직공무원
[]징계공무원 결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일		접수번호		처리기간 3개월	
해직공무원 (징계공무원)	성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신청 사유	해직[]	징계[]			
		년 월 일 해직	년 월 일 징계처분		
해직공무원	해직유형	파면[]	해임[]	당연퇴직[]	직권면직[] 계약해지[]
	해직 당시 근무현황	근무기관	직급	호봉	
	공무원 재직기간	~	사망일 (사망한 경우)		
징계공무원	징계유형	강등[]	정직[]	감봉[]	견책[]
	현재 근무현황	근무기관	직급	호봉	
	공무원 재직기간				
사건 경위	구체적인 내용은 부표에 작성				
신청인 (해직공무원 본인이 아닌 경우)	성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해직공무원 과의 관계	의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공무원 경력증명서
2. 해직·징계 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 관련 자료
3.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서 등 자료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유족대표자 선정서(위임자 신분증 사본 포함,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그 밖에 해직공무원(징계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건 경위서

해직 [] 징계 []	
일시	
장소	
사건 경위	
증빙자료	

유족대표자 선정서

유 족 대 표 자	성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해직공무원과 의 관계	의	전화번호	

본인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직공무원 결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의 유족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1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대표자와의 관계	의
2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대표자와의 관계	의
3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대표자와의 관계	의
4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대표자와의 관계	의
5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대표자와의 관계	의
6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대표자와의 관계	의

첨부서류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각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해직공무원 결정 신청 기간 연장 사유서

해직공무원 (징계공무원)	성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해직공무원 본인이 아닌 경우)	성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해직공무원 과의 관계	
연장 사유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직공무원(징계공무원) 결정 신청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의
한
것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직공무원 결정 재심의 신청서
[]징계공무원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일		접수번호		처리기간 30일	
해직공무원 (징계공무원)	성명(한자)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해직공무원 본인이 아닌 경우)	성명(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직공무원 과의 관계	
신청 사유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이
아
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